


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4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3. 21.
제출자 : 달성군수 

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 있어서 포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포상 후보자 선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운영실태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
- 나. 용어를 정비하여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, 제79조 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5. 2. 21. ~ 3. 13.)결과 : 의견 없음
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군민(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민(이 조례에서 외국인을 포함하는 용어로, 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군”을 “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군수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【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】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포상을 요하는”을 “포상을 할”로, “별지 【제4호 서식】에 의한”을 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의2(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5조에 따른 표창장 수여 요건 해당 여부
2. 제6조에 따른 감사장 수여 요건 해당 여부
3.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

구성한다.
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, 위원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의 각 국장과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되, 군수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 결격사유 관련 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라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가 종료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【별지 제5호 서식】”을 “별지 제5호서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<u>의한</u>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, <u>군민(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<u>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</u>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<u>군수가</u> 행한다.</p> <p>제7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학술, 예술, 체육 <u>기타</u>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. (생 략) <p>제9조(포상의 방법 및 부상) ① 포상은 <u>【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】</u>에 따른다.</p> <p>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포상대상) ----- <u>다른</u> ----- ----- <u>대구광역시 달성군</u> ----- <u>민(이 조례에서 외국인을 포함하는 용어로, 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</u> ----- . --, -----<u>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</u> --.</p> <p>제3조(포상권자) -----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</u>-----.</p> <p>제7조(상장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<p>제9조(포상의 방법 및 부상) ① ----- <u>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</u>-----.</p> <p>② ----- 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

제10조(포상절차)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의 장 및 산하기관의 별지 【제4호 서식】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. 다만, 군민 20인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0조의2(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)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사항 등의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에서 대행하며, 포상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.

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절차) ① -----
----- 포상을 할 -----

-----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5조에 따른 표창장 수여 요건 해당 여부
2. 제6조에 따른 감사장 수여 요건 해당 여부
3.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, 위원은 「대구광역시

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의 각 국장과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되, 군수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 결격사유 관련 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라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가 종료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

<p>제13조(포상대장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<u>【별지 제5호 서식】</u>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</p>	<p><u>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3조(포상대장) ----- 따른----- <u>별지 제5호서식</u>----- -----.</p>
--	---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